



舊韓末 史庫保存과 守護寺刹 (1)

李 錦 淳

(國史編纂委員會 圖書館長)

1. 引言
2. 史庫變遷과 그 規模
3. 史庫圖書曝曬規定
4. 史庫保存豫算과 守護寺刹
5. 終語

1. 引言

우리 民族은 역사적인 기록보존이나 각종 도서의 보관 보존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제1위적인 國民임을 自負할 수가 있다. 三國時代부터의 歷史 編纂이라던가 각종 도서가 편찬되고 또 오늘 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다만 壬辰倭亂같은 外敵의 침입으로 인해서 파괴 소실 약탈을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소홀하게 다룬적이 없다. 高麗時代의 大藏經彫版, 高麗初期의 歷代王의 實錄編纂을 비롯하여 朝鮮時代에 있어서 王朝 實錄編纂, 高麗史編纂과 각종 法典編纂등 눈부신 훌륭한 기록들을 남겼다. 특히 조선왕조시대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불에 탄 도서는 반드시 原形대로 復元시키는 큰 사업을 잊지 않았다.

開港後에는 새로운 文物制度의 수입으로 변화를 이르기는 동시에 列強外勢의 浸透 侵略이 꾸준하게 계속되는 동안에도 우리의 特殊圖書保管處인 史庫와 史書의 保護維持를 위하여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근대적인 제도로 변모시켜 유지 전승시키기에 힘쳤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史書記錄保存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는 상당히 오래였다. 다만 오늘 날처럼 공개되는 도서관이 아니었을 뿐이지 보관 관리나 후대에 전승시켜 民族文化로서 이 바지하려는 정신은 추호도 뒤지지 않았다. 비록 1910년 강제적인 한일 합방으로 國權이喪失되어 한 때는 우리의 史書와 各種記錄文書가 침략자의 손으로 넘어가 主客이 전도되어 우리의 圖書를 우리가 보는데 있어서 금지 제약 당한 고충도 말할 수 없이 커던 것이다.

開港以後의 시기는 정치적인 알루, 외세침략, 경제적으로 수입 수출의 불균형에서 오는 영향 때문에 文化的인 사업이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史庫에 소장된 朝鮮王朝實錄의 보존과 수호를 위하여 노력하

였다. 어려운 여건아래에서 당시 주의깊게 보존에 힘써왔음은 문화민족으로서의 궁지를 살렸고 또 民族文化遺品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를 극복하여 문화유산을 지켜온 민족의 끈기를 보여 주었다.

이제 非公開라는 데서 일반 도서관과 다른 史庫라는 實錄 등 귀중도서의 보관에 힘썼던 특수한 소장 보관처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2. 史庫變遷과 그 規模

史庫는 歷代王의 實錄을 보관하던 書庫로서 규모와 방법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 약간식 다르다. 史庫는 史閣이라고도 하는데 高麗때부터 있었다. 고려때에도 실록을 편찬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해서 없어졌다. 1227년(高宗 14년)에는 明宗 實錄을 海印寺에 보관하였다며 1275년(忠烈王 1년)에는 江華島에서 환도하여 佛堂庫에 실록을 보관하는 등 실록의 보관에 힘쳤다. 그러나 史庫가 본격적으로 실록을 보관하는 書庫로서 일정한 지역에 설치되어 史庫로서 命名되어 제도상으로 국가에서 영구히 유지 보존에 힘쓴 것은 조선왕조때부터라 보겠다.

조선왕조에서 실록을 편찬한 것은 1413년(太宗 13년)에 1代王인 太祖 實錄의 편찬이다. 이후 계속하여 1426년(世宗 8년)에 2代王인 定宗 實錄과 1413년(世宗 13년)에 3代王인 太宗 實錄이 편찬되었는데 이 때 처음으로 각각 2부씩 등사하여 1부는 서울의 春秋館(지금 국사편찬위원회), 1부는 고려시대부터 실록을 보관하여 오던 忠州史庫에 奉安 즉 所藏케 하였다. 그래서 비로소 史庫 즉 實錄을 보관하는 書庫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곳의 書庫로서는 그 보존이 다소 염려됨으로 실록의 완전한 보존을 위하여 1445년(世宗 27년)에 다시 2부를 더 精書하여 全州와 星州에 史庫를 새로 짓고 각각 1부씩 실록을 보관하였다. 그래서 實錄 書庫는 모두 네 곳이 되었으며 世宗 實錄以後의 실록부터는 당초에 4부를 活字로 출판해서 春秋館을 비롯하여 忠州史庫, 全州史庫, 星州史庫에 각각 1부씩을 보관케 하였다. 이처럼 兵火 戰爭에 대비해서 설치한 4개소의 實錄 書庫는 예상대로 전쟁으로 인하여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1592년(宣祖 25년)의 壬辰倭亂으로

인하여 史庫와 史書가 불에 타버리고 오직 全州史庫의 실록만이 남게 되었다.

이 때 全州史庫에 소장된 實錄과 기타 서적은 남게 된데는 全州의 선비였던 安義와 孫弘祿의 애국심 때문이였다. 왜군에게 폐배만 거듭 당하면 당시 官軍은 文化財의 보존에까지 힘쓸 여유가 없었다. 日本軍이 이미 6월에 錦山에 침입하였다는 말을 들은 두 사람은 私財를 털어서 全州史庫에 있는 泰祖실록부터 명종실록 까지 804권과 그밖에 史庫에 있던 各種圖書를 모두 井邑 內藏山으로 옮겨놓고 번갈아 지키다가 선조 26년 7월에 政府에 넘겨 주었다. 정부에서 인수한 실록은 海州로 옮겼다가 다시 江華島, 거기서 다시 妙香山으로 옮겨 안전 하였던 것이다. 참으로 安義와 孫弘祿의 공은 커진 것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정부의 財政事情은 곤란하고 물자도 아주 적었다. 그러나 1607년(宣祖 36년)부터 오직 1부만 남은 실록을 다시 출판하여 2年 9個月만에 활자로서 끝냈다. 이 때 3부만 출판하였으나 全州史庫本인 原本과 校正本까지 합하여 모두 5부가 이룩되었다. 그래서 다시 史庫를 이전보다도 깊숙한 山中으로 마련하여 각각 소장시켰다. 즉 1부는 서울의 春秋館에 소장하고 그 밖에 4부는 江華島 摩尼山史庫, 慶北 奉化郡 太白山史庫, 平北寧邊郡 妙香山史庫, 江原道 平昌郡 五台山史庫에 각각 소장케 하였다.

서울 春秋館에 소장한 것은 1624년(仁祖 2년) 李活의 난으로 타버렸다. 妙香山史庫本은 1633년(仁祖 11년)에 滿洲에서 건국한 後金 즉 清 나라와 外交關係가 악화되어 漢으로 그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全北 茂朱赤裳山에다 史庫를 짓고 옮겨서 안전을 도모케 하였다. 그리고 摩尼山 實錄은 1636년(仁祖 14년)丙子胡亂 때 清軍에 의하여 일부가 파손되었다. 이것은 다시 보수하여 1678년(光宗 4년)에 강화도내의 鼎足山에 史庫를 짓고 옮겼다. 그래서 4史庫로 줄어들었으며 이것은 1910년 한일합방때까지 잘保管되었다.

1910년 이후는 史庫도 필요없게 되어 버렸다. 日帝는 우리 나라 주권을 뺐은 후 鼎足山史庫와 太白山史庫의 실록은 王室圖書館인 奎章閣圖書와 함께 조선총독부로 옮겼다가 1930년에 지금 서울대학교로 옮겼다. 赤裳山史庫本은 舊皇官 藏書閣에 옮겨졌었는데 해방직후 實錄盜難事件이 생겨 없어진 것이 얼마 있었으나 6·25사변 당시 釜山으로 소개하였다가 釜山 大火災 때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五台山史庫實錄은 日本으로 가져 갔으나 1923년 日本 關東大震災에 거이다 타버리고 현재 남아 있는 원본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남아있는 鼎足山史庫와 太白山史庫에 소장되

었던 것 뿐이다.¹⁾

그럼 이같은 史庫의 규모는 얼마나 커던가. 實錄保管場所인 史庫의 형성은 史庫와 璞源閣으로 구별된다. 베곳에 설치된 史庫의 규모에 대해서 날날이 다 알 수는 없으나 1902년에 보수를 위하여 계산된 茂朱의 赤裳山史庫의 경우를 본다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맨 마즈막으로 이룩한 史庫補修가 될 것으로 합방되기 8년전이다. 이 때 茂朱 赤裳山史庫의 규모는 史庫가 7棟 9間, 璞源閣이 5棟 9間으로 되어 있다. 이 때 보수내용을 본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날날이 보수할 부분과 비용에 대해서細目을 정하고 있다.

3. 史庫圖書曝曬規定

史庫에 소장된 도서는 歷代王의 실록과 그 밖에 중요한 책들이다. 이같은 귀중도서의 부폐나 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日光을 쏘이 습기를 채거하고 부폐를 방지하는 동시에 소장된 도서의 現存 亡失有無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哲宗末期 즉 19世紀後半期에 들어와 民亂이 거듭되던 사회적인 혼란속에서 고종의 즉위, 대원군의 집정, 열강세력의 침투등 國政全般에 있어서 변화가 거듭되었다. 더우기 대원군의 집정후 고종 3년에 일어났던 丙寅迫害와 丙寅洋擾, 경북궁 중건등 정치적 경제적인 긴반감속에서도 祖宗으로부터 이어온 史庫保存과 史庫所藏圖書에 대해서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온갖 힘을 기울렸다. 고종이 즉위한 대원군 집정하에서 史庫와 소장된 실록 및 기타 귀중도서에 대하여 포쇄규정이 맨 처음으로 된 것은 高宗 5년 즉 1868년이다. 이 때 金炳學은 四處史庫에 소장된 실록은 3년에 한번씩 포쇄하는 규정이 현재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으나 史庫曝曬 때문에 沿路에 傳廚의 폐단이 있으므로 제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延期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제부터는 5년에 한번씩 포쇄하자는 의견에 따라 실시하였다¹⁾. 그러므로 3년 1차의 포쇄는 이제부터 5년에 한번씩으로 바꾸어졌다. 따라서 종전의 3년까지의 규정보다는 2년이 더 연장된 셈이다. 그러므로 약간 등한한 느낌도 없지 않으나 3년으로 규정해 놓고 실제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5년으로 규정한 것이다. 연장된 이유는 沿路 傳厨의 폐단이지만 당시의 國內 사정으로 보건대 對外關係로 丙寅洋擾등 커다란 문제가 겹쳐서 일어나 복잡다난한 때문에 미처 포쇄하지 못한 원인도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된다. 더우기 高宗 8년에 이르러서

1) 申庚鎬 博士著, 韓國史料解說集, p. 20

2) 光武 6年 全羅北道茂朱郡 赤裳山城暗史兩閣豫算役費明細

1) 承政院日記 高宗5年1月25日

는 睿源閣을 포쇄한例에 따라서 史庫曝曬도 10년에 한번씩 실시케 하였다. 지금까지는 茂朱 赤裳山史庫와 奉化 太白山史庫는 사람을 보내어 睿源閣 포쇄와 겹해서 실시하고 五臺山史庫는 北評事가 갈 때 겹해서 포쇄를 시키는 때가 있었지만 역시 民邑에 있어서 폐단이 있으므로 10년으로 연장실시케 하였다²⁾.

어떻던 史庫에 소장된 실록은 고종 때에 와서는 고종 8년부터 10년마다 한번씩 포쇄케 하였다. 그러나 史庫實錄의 포쇄는 國內外情勢가 더욱 복잡다단하여지고 있지만 고종의 관심사도 커졌다. 大院君과 閔妃와의 정치적인 알루이 아주 심하고 또 日本關係가 복잡하여지고 있는 고종 11년에 高宗이 李裕元 및 金弘集과 대담한 내용중에 史庫曝曬에 관한 내용을 金弘集의 기록인 以政學齊日錄에 의해서 본다면 다음과 같다³⁾.
고종 : 듣건대 外方史庫에 소장된 正祖朝실록이 渗漏朽損한 것이 있다는데,

李裕元 : 臣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고종 : 外方史庫의 포쇄는 몇년만에 하오.

李裕元 : 外方史庫는 맨 처음에는 2년마다 하였으나 그 후 3년, 다시 5년에 한번씩 하였는데 요지음은 10년에 한번씩 합니다.

고종 : 포쇄를 10년만에 하는 것은 너무나 먼 것 같은데

이유원 : 辛未年(즉 高宗 8년)에 포쇄를 하였으니 지금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고종 : 藝文館의 실록은 一閣을 따로 지어 奉安케 하고 政院日記는 따로 한곳을 마련하는 것이 역시 좋을 것 같소.

이유원 : 만약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실록포쇄문제와 소장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표하고 있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조금도 느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藝文館에 소장된 실록은 포쇄연도가 금년 즉 고종11년이니 지금 春節이므로 곧 날자를 백하여 실시케 하자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都城內에 소장된 실록이므로 外方 즉 각지방 史庫에 소장된 실록포쇄규정과는 다른 것이다.

다시 서울에 소장된 實錄을 曝曬할 때 例規를 본다면 포쇄는 翰林이 黑團領이란 禮服을 입고서 行禮를 한다음 실록이 든 櫃子를 꺼내다가 仁政殿 西月臺에서 포쇄하였다⁴⁾. 이것은 서울에 있어서의 경우이지만 실록소장을 奉安한다고 표시한 것을 본다면 外方史庫 즉 地方에 分藏된 實錄의 포쇄에 있어서도 대략 같은 禮法으로 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어떻든 高宗 8년에 이르러 外方史庫의 포쇄 때문에民幣가 생기므로 이것을 멀기 위하여 外方史庫의 포쇄는 10년에 한번씩 하기로 규정하여 너무나 오랜 간격

이라 걱정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실시되고 있다. 즉 高宗 8년으로부터 10년만인 고종 17년에 이르러 外方史庫와 春秋館實錄도 아울러 날자를 백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로부터 다시 10년인 고종 27년경에는 포쇄한 사실이 보이지 않고 다시 10년 후인 1898년 즉 光武 2년에 이르러 史庫守護와 포쇄문제등 전반에 관하여 근대적인 법 규정으로 바꾸어지고 있다. 이것은 1894년 甲午更張으로 인해서 모든 條規가 근대적인 것으로 바꾸어짐에 따라서 실행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고종 27년경의 포쇄가 보이지 않는 것은 國政의 多端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추측된다.

이제 광무2년에 새로 규정된 내용을 본다면 다음과 같다⁵⁾.

제 1조 江華府와 楊州 江陵 奉化 茂朱郡에 있는 史庫는 議政府에서 관장하며 포쇄에 관한 것은 3년마다 宮內府에서 秘書郎을 파견하되 經費는 宮內府에서支出하니 해당 史庫에서는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제 2조 各史庫의 守護規則은 각각 該當地方官이 專擔管轄하고 守直規則은 各史庫에 소속된 寺의 僧侶로서 輪番하여 실시케 한다.

제 3조 各史庫의 守護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史庫에 소속된 財產과 土地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그대로 소속시켜서 守直하는 僧侶의 年經費를 마련하며 그밖에 부족한 額數는 새로 증가하고 每年 修理費와 每3년의 曝曬費를 책정하여 別表와 같이 정한다.

名 處 所	土地財 產仍藍	每 年 新增額	每 年 修理費	每3年 曝曬費
江 華	0	150元	50元	20元
江 陵		140元	50元	20元
奉 化	0			
茂 朱				
計		290元	100元	40元

제 4조 每年 經費支出은 각각 해당 郡守가 해당 郡의 公納金中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度支部에 보고하여 除減케 한다.

제 5조 해당 地方官이 史庫를 奉審하거나 史庫周邊인 東西南北의 四方山의 史庫境內의 松木을 摘奸하는 것은 四孟朔 즉 1月 4月 7月 10月에 거행하되 운반비에 대해서는 該當郡內의 旅費中에서 支出使用케하고 守直의 勤務怠慢을 자세히 살피며 庫舍를 보수

2) 承政院日記, 高宗 8年8月5日

3) 以政學齊日錄 上卷, 甲戌(高宗11年) 2月5日

4) 以政學齊日錄 上卷, 甲戌(高宗11年) 2月5日

5) 官報 第846號 光武2年(1898年) 1月14日 勅令 第2號, 文章은 筆者が 근대식 표현방법으로 고침. 일람표증 合計는 필자가 본 것임.

하는 각종비용은 表에 제시한 每年修理費額을 초과치 말며 그 理由를 기록하여 議政府와 宮內府에 속첩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본령은 光武2年 1月1일부터 시행한다.

위의 내용은 어느 것이나 종전까지 실시해온 史庫奉安規則에 대하여 成文化한 느낌도 없지 않으나 근대적인 법규로 고쳐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 법규로 인해서 史庫曝曬規定이 종전까지 10년에 한번씩이던 것이 이제부터는 3년마다 한번씩으로 바꾸어져서 고종이전의 포쇄규정으로 환원된 것 같기도 하나 꼭 3년마다 실시된 것은 아니였다. 당시는 國家事情이 外勢의 진박감 때문에 특히 日帝侵略이 더욱加重되어 3년마다 史庫曝曬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포쇄규정에 따라 2次年度인 光武7년에는 宮內府大臣 署理 尹定求의 上奏에 따라 秘書郎을 지낸 사립가운데서 2명을 특별히 선택하여 外方史庫의 실록을 포쇄케 하였는데⁶⁾ 이 때 포쇄가 끝난 다음 보고서를 본다면 五臺山史庫 太白山史庫 赤巖山史庫 體足山史庫 등에 대해서 각각 3日間씩 소요해서 포쇄를 끝내고 있다⁷⁾.

위의 규정에서 楊州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나 그 곳은 祖宗朝로부터 중요하게

여기 때문이던가 또는 서울에 있는 春秋館史庫의 守慶寺刹로 된 때문으로 여겨진다.

史庫曝曬가 된 光武7년은 1903년으로 露日戰爭 1年前이란 긴박한 사태속에서도 문화재수호를 위한 행사가 끝났다. 이 때부터 3년인 1906년에 다시 포쇄가 행해졌다. 그 사이는 노·일전쟁, 을사조약, 통감부설치 등의 침략과 이를 물리치려는 義兵鬪爭등 국정이 소용돌이 치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史庫曝曬은 春節에 실시해 하였다. 이 때 어느 정도나 자세히 포쇄가 되었는가 알 수 없으나 이는 우리 主權下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포쇄가 된 것이다.

또한 포쇄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 때에 따라 달랐을 것이나 光武2년도의 일예를 본다면⁸⁾ 四部의 外史庫曝曬費用으로서 80元이 계산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새로운 법규 제정에 따라 史庫를 管轄하는 主務官署도 달라졌다. 즉 建陽2年(1897년)부터 議政府에서 관장케 하였는데⁹⁾ 종전까지 體曹에서 관할하던 것과는 다르게 되었다. (次號繼續)

6) 高宗實錄, 光武7年(1903) 4月2日

7) 官報 第2478號, 光武7年4月4日

8) 官報 第3432號, 光武10年4月20日

9) 高宗實錄, 光武2年6月10日

10) 官報 第689號, 建陽2年7月15日

(29면에서 계속)

예 출	920	270	6,234	7,424	7.4
어 학	1,997	617	2,248	4,862	4.8
문 학	11,625	780	2,362	14,767	14.7
역 사	2,949	546	5,027	8,522	8.5
아 동	1,969			1,969	2
고 서	1,010			1,010	1
계	40,794	6,243	53,735	100,772	100
비 율	40.6	6.1	53.3	100	100

정기간행물은 국내 64종 외국 2종을 구입하고 있으며 국내 160종 외국 8종의 간행물을 기증 받고 있다.

신문은 국내 160종 외국 11종 총 171종을 수집하고 있다.

그의 시청자 자료로서 테코드 480매 스파이드 필름 60매 문화영화 필름 1권등이 있다.

—봉 사—

당도서관의 열람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다.

매월 10일은 정기 휴관을 하며 공휴일은 임시 휴관을 하고 있다,

도서관 봉사는 이용자에게 또는 사회교육면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는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나, 다만 일반 시민이나 청소년 학생들이 스스로의 교육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지하게 학구에 열중한 모습을 볼때 도서관 봉사자로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당판은 폐가식이며 또한 판외대출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참고열람실과 정기간행물실은 완전 개가식으로 자유로이 열람 할 수 있다.

각 기능별 봉사면을 살피면 시청각교육실은 완전 방음시설이 되어 있으며 주 2회의 기록영화 또는 교육영화를 상영하며 슬라이드도 수시 상영한다. 그리고 매일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음악 감상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16개의 개인 연구실에서는 사회인들의 연구 조사 또는 문필가들의 접필 활동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모자열람실은 아동열람실을 결합한 주부열람실로서 가정주부가 어린자녀들과 같이 와서 여가의 시간을 선용하도록 마련하고 있다.

다음에 장당에서는 문화 강좌·강연회·세미너 또는 문화성을 면 강습회장으로도 이용되며 미술 전시회를 열기도 하는데 지난 10월 20일 퇴계·다산선생의 동상 제막식 후 두 선생의 유품전시회를 가졌을 적에는 박대통령께서 관람하시는 영광을 갖기도 했다. (尙輝)